

## 한국의 ADR에 관한 小考

김종권\*

### I. 서론

아시아 지역은 서구에 비해 ADR의 발전단계가 아직 초보수준에 머물러 있지만, 한국의 경우에는 대한상사중재원을 통하여 중재신청 건수가 해마다 늘어나는 등 팔목할 만한 신장을 거듭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아시아지역의 국가들의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고려해 보고, 아시아 지역의 ADR의 형태에 대한 비교 검토를 먼저 시행하기로 한다. 이와 아울러 선진국의 ADR의 탄생과 현황을 파악하기로 한다.

향후 아시아 지역에 직접 및 간접투자가 증대일로에 놓여있고 동북아경제권의 부상과 이에 따른 분쟁해결 등이 관건이 될 것이므로 한국의 ADR 발전방향에 관한 모색을 행하기로 한다.

### II. 본론

#### 1. CAMCA

CAMCA(Commercial Arbitration and Mediation Center for the Americas : 아메리카 상사중재·조정센터)는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에 의거하여 창설된 사적분쟁 해결기구에 해당한다. 이 기구는 NAFTA 역내에서 발생하는 사적분쟁의 해결을 촉진하기 위하여 NAFTA 회원국인 카나다·미국·멕시코 3국의 대표적 중재기관의 공동노력이 결실을 맺어 1995년 12월에 창설된 것이다.

\*\* 신홍대학 경상정보계열 전임강사, 주소 :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1동 117  
(전화번호 : 031-870-3463),  
서울시 노원구 중계본동 중계라이프아파트 110동 602호  
(전화번호 : 02-3391-1360, 핸드폰 : 019-273-7711)  
E-mail : [jkkl112002@hanmail.net](mailto:jkkl112002@hanmail.net)

국제간의 경제거래에서 발생하는 사적 분쟁의 해결촉진을 위해 저렴·신속하고 효과적인 분쟁해결 장치를 마련해 두는 것은 국제간의 무역, 투자 등 국제상거래의 증대와 촉진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국제상거래계약의 당사자들은 사적분쟁을 법원에 호소하지 않고 해결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다. 어느 당사자도 분쟁사건이 상대방 국가의 법원에서 처리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로 알려져 있는 소송 외의 대체적 분쟁해결 수단인 중재나 조정에 의해 해결되기를 원하고 있다.

NAFTA의 경우도 이점을 염두에 두고 역내에서 발생하는 사적분쟁을 소송이 아닌 ADR로 해결하기 위해 그 법적 근거를 NAFTA 내에 두고 있다. 이는 NAFTA 역내 간 경제교류에 따른 제반 장벽이 없어지면서 물품, 서비스 및 자본거래가 급증하게 되었고 그에 따른 사적 상사분쟁의 해결촉진이 현안의 문제로 부각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 2. 아시아지역의 ADR 현황

### 2.1 중국

중국에서 국제상사분쟁을 해결하는 기관으로 가장 유명한 것은 CIETAC(The China International Economic and Trade Arbitration Commission;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를 들 수 있다. CIETAC 중재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ADR이 중국에서는 예외적인 현상이 아니라 하나의 규칙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CIETAC 중재 규칙에 따르면, 당사자들이 당해 분쟁을 중재절차를 경유하지 않고 해결한 경우 당사자들은 판정부에 자신들의 합의내용을 화해판정 형식으로 내려줄 것을 요청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당해 사건을 철회 할 수 있는 실정이다.

또한, 중재판정부로 하여금 중재절차 진행 중에 조정(mediation)절차를 개시하도록 요청할 수가 있다. 실제로 거의 모든 중재사건에서 CIETAC 중재판정부는 당사자들이 이러한 조정절차를 시도하도록 권유하고 있다. 조정절차는 서구 국가들처럼 단순히 당사자들의 합의를 촉진하는 기능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들에게 합의를 지시하는 (directive) 성격을 갖고 있다. 대개 중국의 중재인들은 조정인으로서의 역할 변신에 대

해 거부감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조정이 실패할 경우 다시 중재절차로 돌아가는 경우가 흔하다. 또한 조정절차 중에 얻은 정보가 차후 중재절차에 영향을 미치게 될 위험이 있다는 사실에 별로 개의치 않고 있다. 그러나 CIETAC 중재규칙에서는 분쟁당사자들이 조정절차에서 얻은 정보를 중재절차에서 원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전문가견해(expert opinions), 간이심리(mini-trial) 등과 같은 다른 ADR은 중국에선 별로 알려져 있지 않다.

### 2.1.1 홍콩

홍콩에선 ADR이 비교적 잘 발달되었다. 홍콩 중재법에서는 조정(conciliation)에 대한 언급은 있지만 구체적 정의를 갖고 있지 않다. 개정 중재법에서는 조정에 중국의 예에서와 같이 ‘Mediation’을 포함시켰다. 조정(conciliation)을 보다 적극적인 절차로 보는 사람들도 있는데, 조정절차에서는 제3자가 분쟁의 본안에 대해 자신의 의견과 원만한 해결을 위한 합의안까지 제시한다. 이는 합의안에 대한 자신의 의견제시를 자제하고 단순히 당사자의 합의도출 과정을 보조하는 선에서 끝나는 ‘촉진적(facilitative)’ 방식과는 대조를 이루고 있다. 홍콩 중재법에서는 동일한 사건의 중재인 또는 조정인이었다는 사실만으로 그가 조정인으로 선정되는데 이의를 제기할 수는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조정절차에 3개월의 기한을 두고 있다.

홍콩에서 ADR이 활성화 된 데에는 2가지 요인을 꼽을 수 있다. 첫째, 국민들이 소송 또는 중재절차에서 생기는 막대한 경제적 부담을 꺼려하고 있기 때문인데, 홍콩의 변호사 비용은 전세계적으로 가장 비싼 편에 속하고 있다. 둘째, 홍콩국제중재센터(The Hong Kong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re) 소속 회원들의 ADR에 대한 우호적 태도를 들 수 있다.

아시아 최대 규모의 건설공사였던 첨략록공항 건설에서 홍콩항공공사는 분쟁평가위원회(Dispute Review Board; 이하 DRB)를 설치해 동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맡도록 유도하였다. 이 위원회는 매 13주마다 공항 건설현장에서 모임을 갖고 건설계약 기간동안 지속적인 감독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건설기간 동안 접수된 사건은 몇 건 되지 않고 또한 대부분의 사건은 공항이 개항되는 시점까지 접수가 보류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DRB의 존재 때문에 클레임 신청이 소극적이었던 것은 아닌지 또는 결과적으로 이 때문에 건설계약자들이 자기들이 알아서 스스로 분쟁을 해결했는지 여부는

잘 알려져 있지 못하다. 하지만, 1997년 공항건설 공사가 끝난 뒤 상당수의 클레임이 중재로 접수되었으며 분쟁금액만 보더라도 2001년 5월 현재기준으로 US\$ 900million에 달하였다. 이들 클레임은 현재 대부분 처리되었는데, DRB의 의장이었던 Neil Kaplan은 DRB의 임기가 좀 더 연장되어야 했다는 아쉬움을 나타냈다.

홍콩은 영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판결절차(adjudication process)’를 관심 있게 연구하고 있는데, 홍콩 대법원장이 일부분에 대한 연구를 지시한 바 있지만 가까운 장래에 홍콩에서 이 제도를 실시한다는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홍콩은 위 절차를 실시하고 있는 영국처럼 소송사건 과다로 법원이 부담을 느낄 단계까지 이르진 않았기 때문이다.

홍콩 가정법원은 혼인관련 분쟁을 법원이 직접 처리하지 않고 법원부속조정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시도하고 있는데, 이러한 절차 신설을 통해 ADR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도 높아지고 있다. 법원이 발표한 한 보고서에 따르면, 홍콩의 소송의뢰인 4명 가운데 1명은 이러한 법원부속 ADR 절차를 알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절차는 구속력이나 강행적 성격을 갖고 있지는 않다.

중국과 마찬가지로 홍콩에서도 기타 다른 ADR 절차(전문가 견해, 간이심리, 조정-중재)는 그리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실정이다. 지금까지 그나마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절차는 조정(mediation)인데, 홍콩에서 조정이라 함은 대개 제3자가 당사자들에게 조정안을 제시하는 것이 아닌 단순히 합의도출을 보조하는 ‘촉진적’ 성격을 가진 절차를 의미한다. 홍콩조정위원회(The Hong Kong Mediation Council)은 기존의 홍콩국제중재센터 내에 있는 조정그룹에서 분리해 나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동 위원회는 홍콩 내에서 가장 권위 있는 기관이며, 가사사건과 상사사건을 다룰 150여명에 달하는 조정인 명단을 확보하고 있다.

하지만, 조정인 수에 비해 실제 조정 사건 수는 그다지 많지 않은 실정이다. 일반 대중들이 조정이 어떤 절차인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데에 우선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전통적으로 중국인들은 자신들의 분쟁을 정식 조정인이 아닌 가족의 최고 어른이나 지역유지 같은 제3자에게 의뢰하는 관습이 있기 때문에 이 또한 그 실적이 미비한 이유이다. 국민들에게 조정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고자 동 위원회는 홍콩수자원공사와 공동으로 2001년 말부터 수자원 관련 클레임을 조정(mediation)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강구하였다. 이러한 소액분쟁은 가능하다면, 경험 있는 조정인에

게 의뢰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 2.2 말레이시아

ADR은 말레이시아에서는 비교적 최근에 소개된 개념인데, 이에 대한 논의는 많이 있지만 실제로 ADR이 정확히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하는 그리고 실제로 ADR을 이용하는 사람은 극히 드문 실정이다. 말레이시아에서 ADR은 대개 조정(mediation 또는 conciliaton)을 의미하는데, 이중에서 Mediation이 Conciliaton 보다 더 많이 알려져 있으며, 보편적인 상황이다. 후자는 주로 학문적 연구의 대상일 뿐 활용도는 낮은 실정이다.

ADR은 말레이시아에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는가 알아보기로 한다. 우선 조정(mediation)분야를 보면, 절차의 이해도에 비해 실제 이용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 상황이다. 가장 큰 걸림돌은 절차의 이해도가 문제인데, 일반인들이 조정절차를 일종의 협상(negotiation)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은 그런 절차라면 당사자끼리 만나서 해결하면 되지 굳이 제3자인 조정인을 개입시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또한 구속력이 없다면 조정절차를 이용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 있기도 하다. 실제로 조정절차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조정인이 "판결"을 내려줄 것을 기대하는데, 이는 교육 차원의 문제이다. ADR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긴 하나 일반 국민들 심지어 법조계에 있는 사람들조차 정확히 ADR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변호사들은 ADR(혹은 조정)절차를 좀더 정확히 알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의뢰인들이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도 관심을 갖고 연구해야 하는 상황이다.

앞에서 홍콩의 사례에서 언급한 '판결절차' (adjudication)는 대형공사 등에서 계약서의 한 조항으로 삽입되고 있는데, 특이한 것은 이것이 중재절차의 사전절차로서의 성격을 갖는다는 점이다. 이 절차를 이용할 경우, 우선 계약서에 미리 명시된 사람 또는 회사에 분쟁을 의뢰하고 그가 판정을 내리면 동 판정은 추후 중재절차에서 다시 검토되기까지는 구속력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사실상 '전문가결정' (expert sdecision)과 같은 것이나, 실제로 대부분의 분쟁은 절차의 전과정을 거치지 않고 해결되었으며, 따라서 이러한 '판결절차'의 효용성을 가늠할 충분한 사례가 없는 상황이다. 조정조항(mediation clauses) 역시 주요 계약서에 많이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분쟁은 중재를 통해 해결되고 있으며 그 효용성에 대한 검증은 앞서 언급한 '판

결절차’의 경우와 상황이 흡사하다. 기본적으로 협상 단계에서 계약당사자들은 조정 절차를 그다지 선호하지 않고 있으며, 계약 담당자(변호사 등)들도 이를 권유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중재는 비교적 선호하는 상황이다. 말레이시아 사람들은 세부 적이고 자세한 내용은 모르더라도 중재와 조정의 차이점이 무엇인가는 대충 알고 있는 듯하다. 즉, 조정은 구속력이 없지만 중재의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과 같은 구속력이 보장된다는 차이를 알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중으로 비용과 시간을 허비하느니 차라리 처음부터 중재를 이용하는 것이 낫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일반 국민들에게 조정을 이용함으로써 얻게 되는 유용함에 대해 교육을 할 필요성이 있다. 타협과 원만한 인간관계를 선호하는 국민성을 감안할 때 조정제도는 말레이시아에 적합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막상 분쟁해결조항을 이용하게 되는 단계 까지 이르게 되면 이는 두 당사자간의 관계가 이미 깨져버렸다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이제 당사자들은 서로의 입장을 듣기보다는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는 데에만 주력하게 될 수 있다. 합의안 도출이 힘들다고 판단하고 제3자의 판단을 구하며, 분쟁의 신속한 해결에 별로 관심이 없는 당사자에게는 절차가 “지연” 되는 것도 장점이 되고 있다. 교육이나 세미나를 통해 ADR에 대한 대국민 홍보 노력은 꾸준히 이루어져 왔다. 변호사협회나 쿠알라룸프르 지역중재센터(KLRCA), 건설산업협회(CIDB) 등에서는 ADR의 홍보를 위해 여러 차례에 걸쳐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또한 조정인 교육프로그램을 개설하여 현재 상당수 조정인을 양성하기도 하였다. 건설산업협회에는 76명의 공식 조정인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다. 법조계에서도 점차 조정이나 기타 ADR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법원의 소송절차에 따른 지연이 가장 큰 원인일 것이다. 법원 판사들 역시 당사자들 간의 협상을 권유하기도 하고 실제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도 한 상황이다.

당사자의 합의에 따른 것인 표준계약서상에 정해진 것인든, 계약서에 조정(mediation)과 같은 ADR조항(절차)이 들어가 있으면 동 조항은 계약서의 다른 조항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된다. ADR에 대한 인식이 보편화되고 점차 계약서에 ADR조항을 삽입하는 사례가 늘어가는 추세를 감안해 볼 때 이전 계약서에 ADR조항을 넣는 것에 대해 그리 큰 거부감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 조항은 대개 중재(arbitration)의 사전단계로서의 성격이 강하며, 이 조항을 근거로 당해 절차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중재절차를 중지(stay)시키는 효력을 갖고 있다. 정식 ADR절차의 활용도가 낮기 때문

에 아직까지 조정인이 업무 과다에 시달리는 수준까진 아닌 상황이다. 외국의 경험 있는 조정인을 영입하는 방안도 고려되었으나 상대적으로 비용이 높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꺼려하고 있다. 외국인 조정인과 국내 조정인이 공동으로 절차에 참여케 하여 국내 조정인에게 좋은 경험이 될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도 있었으나 이 역시 비용 문제 때문에 어려운 실정이다. 결론적으로 말해 말레이시아에선 ADR이 발전하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진 초보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연구와 지원이 꾸준이 이어지고 있으며 ADR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외국의 경우처럼 시간이 흐르면 분쟁 해결분야에서 ADR이 이 지역에서도 확고한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 2.3 인도네시아

인도나 미국 등과 같은 나라와 비교해 볼 때 인도네시아에선 소송이 그리 활성화 되어 있지 못하다. 국가적 이데올로기라 할 수 있는 'Pancasila'는 당사자들이 심사숙고하여 합의점에 이르도록 하고 어떠한 종류의 대립도 되도록 피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이념은 대부분의 입법에서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는 상황이다. 예를 들어 회사법에서는 주주총회나 이사회가 특정 안건에 대해 투표를 하기 전에 먼저 이해관계인들 사이에 합의를 도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법원 역시 원고가 소를 제기하기에 앞서 당해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다른 방안을 강구한 사실을 입증하도록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인도네시아의 개정 중재법(1999년, 법률제30호)과 인도네시아중재협회(Badan Arbitrase Nasional Indonesia; 이하 BANI) 중재규칙 역시 중재판정부가 심리를 개최하기 전에 당사자들로 하여금 우호적인 해결(합의)을 찾도록 권유하게 하고 있는 상황이다.

1999년 8월 1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인도네시아 개정중재법은 지금까지 중재에 관한 법률 중 가장 광범위하고 혁신적인 법률이라고 할 수 있는데, 동 법에서는 ADR에 대한 언급이 들어 있으며 상사분쟁을 포함하여 당사자들이 처분할 수 있는 모든 분쟁에 적용되고 있다. 또한 국내, 국제사건을 모두 다루고 있으며, 동 법은 19세기 네덜란드 민사소송법('RV'로 잘 알려져 있음) 중 중재에 관한 부분(제1장 615조651조)을 대체하여 개정되었는데 이 RV는 아직까지도 인도네시아의 소송절차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에서 중재는 생소한 개념이 아니며, 기존 RV의 관련조항을 살펴보아도 네덜란드의 통치하에 있었던 19세기에 중재는 이미 인

도네시아에서 분쟁해결을 위한 공식적인 절차로 인정되고 있다. 중재, 더 나아가 조정 같은 다른 ADR기법 역시 위에서 언급한 인도네시아의 국가적 이념인 ‘Pancasila’ 와 조화를 이루고 있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분쟁은 - 상사 사건이든 비상사 사건이든 - 주로 당사자간의 협상(negotiation)을 통해 해결되었으며, 이러한 당사자간의 우호적인 해결이 실패할 경우에 비로소 중재나 소송같이 제3자가 개입하는 절차를 밟는다.

개정 중재법의 내용 가운데 가장 특징적인 것은, 당사자들의 자유로운 절차 선택을 규정한 ADR에 관한 부분인데, 동 법 제2장에서는, 당사자들이 계약서상에 당사자간의 직접 협상을 통한 우호적 해결을 우선적으로 도모한다는 내용을 기재할 것을 권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당사자간에 우호적 합의안이 나올 경우 판정부 또는 조정인은 이를 서면으로 기록하고 이것이 화해판정형식을 갖추어 당사자들에게 구속력을 갖게 되며, 중재판정과 똑같이 강제집행이 보장되고 있다. 이러한 당사자간의 원만한 해결이 불가능한 경우 제3자가 개입하는 중재나 소송절차를 따르게 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인도네시아인들은 법원의 소송절차나 중재절차 보다는 분쟁당사자간의 직접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려는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문화적인 성향 때문만은 아니며, 법원 판결에 대한 예측가능성이나 확실성이 낮으며 최종판결이 나오기까지의 시간적 경제적 비용이 너무 크기 때문인 것이다. 기업들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까지도 이제는 소송외 분쟁해결방식에 익숙해져 있으며 또한 계약서 상에 분쟁해결 방식으로서 점차 소송보다는 중재를 선호하는 추세에 있다.

인도네시아에선 조정인에게 상당한 재량과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데, 단순히 당사자를 보조하여 분쟁해결을 촉진하는 기능(유럽 등의 경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해결안을 제시하는 역할까지 갖고 있다. 인도네시아인들은 일단 분쟁이 발생하면 당사자들끼리 합의안을 찾으려고 하며 제3자를 개입시키려 하지 않지만, 일단 조정인과 같은 제3자의 도움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에게 상당한 신뢰를 가지며 재량권을 주고 있다. 조정인은 스스로 해결안을 작성하여 당사자들에게 제시하기까지 하고 있다. 간이심리, 전문가견해 등과 같은 기타 ADR 방식은 인도네시아에서도 그다지 활성화 되어 있지 못하지만, ADR에 대한 인식이 점차 증대되고 있고 이 분야에 자격있는 조정인들도 많이 생기면서 앞으로 여러 분쟁사건이 ADR 방식을 통해 해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도네시아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들은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는 한 원하는 방식을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이는 상

설 분쟁해결기관을 경유하는 방식 이외에도 당사자간의 임의(ad hoc)방식으로도 가능하다. BANI(Badan Arbitrase Nasional Indonesia)는 인도네시아의 대표적 중재기관인데, 아직 정식 조정기관은 없지만 BANI는 중재인 뿐만 아니라 조정인 명부를 보유하고 당사자들이 요청하는 경우 조정인을 추천해 주고 있다. 동 명부에는 내국인 뿐만 아니라 외국중재인을 포함한 법조계, 학계, 실업계의 다수 전문가를 확보하고 있다. 중재인들이 중재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법원의 소송절차를 답습하는 폐해를 막고자 BANI는 중재인을 위촉하는 과정에서 세심한 심사과정과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BANI는 분쟁의 예방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즉 당사자들이 계약서상의 일정한 사항에 대해 법률적 해석을 요청하는 경우, BANI가 일정한 견해를 제시하면 이는 계약서상의 다른 조항과 동일한 효력과 구속력을 가지게 된다. 이는 개정중재법에서도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동일이다.

인도네시아는 근로기준법에서 조합, 사용주, 정부관계자로 구성된 지방/중앙 위원회를 구성하여 고용관련 분쟁을 조정을 통해 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용자는 동 위원회의 승인 없이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는데, 만약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해고하고 하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 그 이하의 경우에는 지방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측 모두 심리에 참가하여 진술을 할 수 있으며 그 후에 위원회가 권고안을 제시하게 된다. 위원회의 권고안에 이의가 있는 경우 항소를 할 수 있으며 최종적으로 대법원까지 갈 수 있지만, 대부분은 위원회까지 가지 않거나 가더라도 위원회의 권고안을 수락하는 선에서 끝나고 있다.

그 밖에 분쟁해결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몇 가지 있는데, 「The U.S Commercial Centre」는 인도네시아에서 활동하는 미국, 인도네시아 기업인들이 무역이나 기타 상거래상의 분쟁을 중재나 소송이 아닌 조정, 협상을 통해 해결하도록 도와주고 있다. 민간환경단체인 인도네시아 환경법센터(ICEL) 역시 환경관련 분쟁을 조정(또는 중재)을 통해 해결할 것을 권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ADR 기법이 많이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 대부분의 분쟁은 비공식적인 방법으로, 당사자간의 직접적인 협상을 통해 해결되고 있는 실정이며, 상사조정에 대한 인식이 그리 보편화되어 있지 않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상공인들은 조정절차가 구속력 없는 절차라는 점을 모르고 있는 경우도 많으며, 법조계 뿐만 아니라 실업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이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 실정이다.

### 3. 한국의 ADR 발전방향 모색

#### 3.1 한국의 ADR의 특징

한국의 경우에는 중재제도가 비교적 잘 발달된 나라로 알려져 있다. 또한, 향후에도 더욱 발전적인 방향으로 전개될 것이 확실한데, 한국의 중재제도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단심제이다. 중재판정은 분쟁당사자 간에 있어서는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고 있다. 다시 말하면 판정에 불만이 있어도 재판처럼 2심 또는 3심 등 항소절차가 없다는 것이다.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라 함은 불복신청을 할 수 없어 당사자에게 최종적 판단으로 구속력을 갖는다는 뜻이다. 둘째, 신속한 분쟁해결 수단이 되고 있다. 소송은 평균 대법원까지 23년이 걸리지만, 중재는 국내중재가 약 4개월, 국제중재가 약 6개월 정도 소요되고 있다. 신속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집중심리로 심리횟수를 줄이고 예비회의제도를 활성화하여 심리자체의 소요시간도 단축하여 진행하고 있다. 셋째, 저렴한 중재비용이라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중재제도가 단심제이고 신속성에 중점을 둔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는데, 재판비용보다 저렴하고 대한상사중재원은 외국중재기관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해결하고 있다. 넷째, 국제적인 인정을 받고 있다는 측면이다. 「뉴욕협약」에 가입한 체약국 간에는 외국중재판정을 상호간 승인하고 강제집행도 보장하고 있다. 따라서 국적을 달리하는 기업인 간의 분쟁해결제도로서 각광을 받고 있다. 다섯째, 전문가에 의한 판단이라는 특징이다. 실체적 진실을 정확하게 찾아내기 위하여 분쟁 분야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로 하여금 사건을 검토하고 판정토록 하고 있다. 즉, 변호사의 법률지식, 기업인의 사업경륜, 교수의 학문적 이론 등이 종합될 때 정확한 판단이 가능한 데 한국에서는 이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여섯째, 분쟁당사자가 중재인을 직접 선임 또는 배척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당사자에게 스스로 중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동시에 중재인 후보를 배척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일곱째, 충분한 변론기회의 부여측면이다. 중재는 단심제로 운영하기 때문에 일단 내려진 중재판정은 변경될 수 없다. 따라서 분쟁당사자는 중재인에게 충분한 변론기회와 변론시간 그리고 증인 또는 증거물 제출기회를 요구할 수 있다. 여덟째, 심리의 비공개 특징이다. 중재심리는 당사자간의 분쟁발생 책임소재에 대한 공격·방어과정에서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는데 있다. 따라서 당사자가 허락하지 않는 한 사건과 무관한 제3의 심리과정 참여를 허용하지 않으며 그 절차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아홉째, 민주적인 절차로 진행된다는 것이다. 즉 중재인은 당사자와 평등한 위치에서 상하 격식 없이

심리를 진행한다. 증인선서를 요구하지 아니하며 관계 당사자의 인격을 최대한 존중하고 있다.

### 3.1 한국의 ADR의 발전방향

2003년 대한상사중재원을 통한 중재신청이 211건에 처리건수가 249건이었다. 그리고 알선이 453건, 상담이 5,221건 처리되었다. 또한, 중재판정부 구성기간과 심리회수 단축 등 중재절차가 개선되었다.

무역, 해사 및 건설분야의 중재인 포럼이 결성되어 개최되었으며, 공공 및 민간기업체에 대한 중재제도 안내 등 국내 중재제도의 저변확대와 한·중·일 국제중재 심포지움 공동개최, 중남미 중재기관 측과의 중재협정체결 등 국제협력 관계도 강화되었다.

한편, 중재신청이 비록 최근의 증가추세를 유지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중재제도 전체의 공익성과 효용성에 비추어볼 때 중재활용이 아직 만족스러운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정부 및 법조계 측의 이해와 협조가 더 늘어나야 한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중재규칙, 중재사무국의 기능, 중재절차 등에 있어서도 효율성제고 노력이 지속되어야 한다.

## III. 요약 및 결론

국제간의 경제거래에서 발생하는 사적 분쟁의 해결촉진을 위해 저렴·신속하고 효과적인 분쟁해결 장치를 마련해 두는 것은 국제간의 무역, 투자 등 국제상거래의 증대와 촉진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국제상거래계약의 당사자들은 사적분쟁을 법원에 호소하지 않고 해결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다. 어느 당사자도 분쟁사건이 상대방 국가의 법원에서 처리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ADR로 알려져 있는 소송 외의 대체적 분쟁해결 수단인 중재나 조정에 의해 해결되기를 원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세계 13위 교역국가의 위치에 걸맞게 대한상사중재원을 통하여 중재신청 건수가 꾸준히 증가추세를 이루는 등 발전일로에 놓여 있다. 하지만, 중재제도 전체의 공익성과 효용성에 비추어볼 때 중재활용이 아직 만족스러운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부 및 법조계 측의 이해와 협조가 더 늘어나야 한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다.